탄 원 서

항소심 제출용 · 개별 형사책임 심리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님 및 재판부 귀중
사건 2026노648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고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탄원 취지 무죄 판단 요청 및 예비적 형 감경 탄원

---

1. 탄원을 올리는 마음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시민으로서 김봉식 피고인의 책임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에서도 국회는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찰이 그 출입을 제한한 행위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지휘관에게 맡겨진 의무가 무거운 만큼, 그 의무를 어긴 경우의 책임도 엄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생긴 중대한 결과가 곧바로 모든 지휘관에게 동일한 범죄 목적과 동일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식 피고인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휘한 사실과 별도로, 그가 각 시점에 무엇을 알고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불법성을 깨달았을 가능성과 이후 대응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무죄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다시 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 1심의 판단과 두 차례 출입 차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9일 1심은 김봉식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군의 국회 출동 계획을 통보받고 경찰력 배치를 지휘했으며,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오후 10시 48분경 첫 출입 차단, 오후 11시 6분경 신분 확인 후 출입 허용, 오후 11시 37분경 포고령을 이유로 한 재차단이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짧은 차단만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나중의 차단만을 보고 그사이의 출입 허용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일시적 출입 허용이 앞선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이후의 재차단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 검토 끝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의식하여 출입을 허용했다면, 왜 포고령 발표 뒤 다시 전면 차단하였는지가 더 엄격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의 형성과 변화, 명령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시적인 출입 허용의 의미와 재차단의 책임을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국회 첫 번째·두 번째 출입 차단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이 참모들과 헌법 및 계엄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한때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고, 국회에 배치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자제시켰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서 기록에 따라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주장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대응이 실제 있었다면, 일관되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는지에 관한 평가와 형의 무게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피고인이 사전 회동으로 군의 국회 투입을 미리 알았고, 나중에는 포고령을 근거로 재차단을 직접 지시했으며, 군의 국회 진입도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증거가 강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재판부께서는 법률 검토의 시각과 내용, 출입 허용 명령의 전달·실행, 포고령을 받았을 때의 판단, 차단 재개 명령의 발령 주체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주십시오. 그 결과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입증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국회 밖 경찰력 배치와 군 진입 협조도 구체적 행위별로 보아 주십시오

계엄 당시 경찰의 업무에는 국회 주변 안전조치라는 설명과 국회 출입을 막는 실제 조치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치안 유지라는 말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방해한 조치가 정당해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모든 기동대 증원이나 현장의 물리적 대응, 모든 군 관련 통화가 동일한 범죄 목적 아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기동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는지, 누가 차벽 설치를 지시했는지, 현장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자제하도록 한 구체적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군 지휘관과의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상대와 내용,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군의 국회 진입을 돕는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중대하게 평가하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목적이나 다른 작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를 입증자료로 판단해 주십시오. 목적의 인식을 너무 좁게 보아 책임을 축소하지도, 확인되지 않은 목적까지 넓게 귀속시키지도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5.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각 요건을 구분해 주십시오

형법 제87조 제2호와 제91조의 심리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와 중요한 임무의 수행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별도로 직권 남용의 내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대상, 방해된 권리행사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국회경비대에 전달된 명령의 문구, 법률상 지시 관계, 국회 출입이 제한된 의원과 직원의 권리, 지휘부와 현장 사이의 실행 과정을 각각 대조해 주십시오. 어느 하나의 위법한 결과만으로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이미 참작된 사정에 더하여 책임의 비례성을 살펴 주십시오

1심은 계엄의 사전 기획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출입을 한동안 허용한 조치,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사정, 공직생활과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유리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사실이라고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징역 10년이라는 형과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검이 제시한 불리한 정황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한적 관여 범위를 함께 살펴, 국가적 사건의 중대성과 개인의 책임 정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보석 허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근거가 아니므로 탄원의 핵심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향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판 출석, 소송절차 협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사실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은 존중하되, 다투는 법률적 고의까지 허위로 인정하게 하는 방식의 선처 요청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7. 맺음말

형벌의 공정함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실제로 내린 결정과 감당해야 할 결과를 정밀하게 비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식 피고인의 일시적 출입 허용과 뒤이은 재차단, 군의 국회 진입 관련 대응, 현장 조치의 통제 범위, 각 범죄의 고의를 함께 심리하여 주십시오. 유죄의 증명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에는 그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고, 유죄가 유지되는 부분에도 이미 드러난 사정과 실제 가담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실제 제출 시 기재사항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